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2017. 12. 26.

관계부처 합동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2016.11.9 제정. 2016.11.10 시행 2017.5.10 일부개정, 2017.7.1. 시행 2017.12.26 일부개정, 2018.2.1. 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함) 시행령」 제3조제2의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과 같은 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함)」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함)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대한 무역항 출입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17.12.26.>

- 1. "국제항해선박"이란 「항만보안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국제항해선박을 말한다.
- 2. "무단상륙" 이란 「항만보안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에서 무단하선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하였던 국제항해선박의 선장 또는 운수업자가「출입국관리법」제96조에 따라 처벌 받은 경우를 말한다.
- 3. "무단이탈" 이란 제2호에서 정한 무단상륙 중 「항만보안법」제27조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 받은 보안시설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출입허가" 란 「선박입출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출입허가 를 말한다.

- 5. "입항금지" 란 「선박입출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출입허가 를 불허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 무역항의 「항만보안법」 제33조 제1항제3호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으로 정한 시설과「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5.10., 2017.12.26.>
 - 1.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하는 조선소의 선박계류시설
 - 2. 석유 비축기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또는 화력발전소의 선박계류시설
 - 3. 「선박법」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 적선박이 기항하는 불개항장의 선박계류시설
 - ② 제1항의 시설 내에 계류·운항 또는 정박 중인 국제항해선박(「선박법」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과 「선박안전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제외)에 승무하였던 선원의 무단상륙 또는 무단이탈 사건 발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제2의2호에 따라 무역항 출입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과 그 선박이 제1항에서 정한 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5.10., 2017.12.26.>
- 제4조(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 선박 지정 통보) ①출입허가 또는 입항금지 대상 선박은 무단상륙 또는 무단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같은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역항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통보서'로 보안관계기관 등에 통보한다.
- 제5조(출입허가 대상 선박의 지정 기간) 출입허가 대상 선박의 지정 기간 은 각 호와 같다.
 - 1. 무단상륙 사건이 1회 발생한 선박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단, 6개월간 출입허가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3회의 출입허가를 받고 입항하여 무단상륙·무단이탈 없이 출항하는 날까지
 - 2. 제1호에서 정한 출입허가 대상 선박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단상륙 사건이 재발한 선박은 지정일로부터 1년. 단, 1년 간 출입허가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6회의 출입허가를 받고 입항 하여 무단상륙·무단이탈 없이 출항하는 날까지

- 제6조(입항금지 대상 선박의 지정 기간) 입항금지 대상 선박의 지정 기간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5조에 따른 출입허가 대상 선박 지정 기간 중 무단상륙 사건이 재 발한 선박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 2. 무단이탈 사건이 1회 발생한 선박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 3.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선박에서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무단이탈 사건이 재발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 4.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선박에서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무단이탈 사건이 2회 재발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영구 입항금지
- 제7조(출입허가 조건)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에 따라 지정·통보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 선원 무단하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받아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지방관리무역항의 경우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포함한다) 및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조건부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선박으로부터 제출 받은 선원 무단하선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만보 안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고 시정 완료시까지 입항을 불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시정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서 따른 출입허가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 1. 선박 접안 즉시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 경비업체의 경비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 중 경비업 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비원을 출항시까지 상시 배치하여 허가 받지 않

- 은 선원의 무단 하선을 방지
- 2. 선장은 선원에 대하여 무단상륙 및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 시하고 선박 접안 후 매 4시간 마다 선원의 이탈 여부를 점검하여 관 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 3. 선박대리점에서는 1일 2회 이상 계류중인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원 의 이탈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
- 제8조(조치결과 통보 등)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를 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세관 및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지방관리무역항의 경우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포함한다)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항만운영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출입허가 조건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제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은 자는 「항만보안법」제49조제5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항만보안법」제52조제1항제2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출입허가 등의 지정 해제 신청) ①제4조에 따라 출입허가 또는 출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소유자 등은 무단상륙 또는 무단이탈사건 발생당시 선박의 소유자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은 선장이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출입허가 등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허가 등의 지정 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의 국적 증서 및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의 지정 해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의 지정 해제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출입 허가 또는 출입금지 대상 선박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역항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지정 해제 통보서'로 보안관계 기관 등에 통보한다.

부 칙 (2017.12.26.)

이 지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역항 출입허가(입항금지) 대상 선박 통보서

관리번호	지정구분	
선 명	국 적	
호출부호	IMO번 호	
지정일자		
지정기간		
지정사유		

출입허가 조치결과 보고서

□ 작성기관 :	(담당자 :	직·성명 기재)	,
_ , _ ,	(L O , ,	, , , , ,	

관리번호	해당선박의 관리번호 기재				
선 명			국	적	
호출부호			IMOŧ	번호	
소 유 자		(전화번호)	선박대	리점	(전화번호)
출입허가 신청일자			조치 : 일	완료 자	

조 치 내 용

- 1. 선원 이탈 재발방지 대책
 - o 징구일자 :
 - o 검토결과 :
 - o 시정명령 등 추가조치사항 :
- 2. 출입허가 여부 결정
 - o 결정일자 :
 - o 허가여부 :
 - 0 조치사유 :
- 3. 출입허가 조건 등

무역항 출입허가 등의 지정 해제 신청서

관리번호	5			지	정구분	로				
선 명	-			국	Z	덕				
호출부호	호출부호		IMO번호							
지정일지	ŀ				지정기간					
		선박 -	소유자 및	선징	· 변	경 /	나항			
		선박 소유자		선 장						
구 분	4	성명(회사명)	변경일자	성	명	생년	크월일	국	적	변경일자
사고당시										
변 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무역항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상기선박의 사고발생 당시 선박 소유자 및 선장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무역항 출입허가 등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2. 승무·	원병	구								
2016										
신청인 :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무역항 출입허가(입항금지) 대상 선박 지정 해제 통보서

관리번호	지정구분	
선 명	국 적	
호출부호	IMO번 호	
지정일자		
지정기간		
해제일자		
해제사유		